

“**따뜻한 금융, 상생하는 금융, 소비자 중심**의 금융 -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”



보도자료

2013. 8. 6. [화]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		
책임자	박봉호 팀장 (3145-5108)	담당자	이상현 수석검사역 (3145-5140)
배포일	2013. 8. 5. (월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9~92) 총 4매

제 목 :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1. 불법적인 통정매매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('09.2월)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하여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 (10건)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
 - 이와 같은 손익이전 거래의 대부분은 상·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(주식워런트증권) 또는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(遠月物)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하였음
 - 구체적인 통정매매 방식으로
 - ① 우선 유동성이 적은 종목*을 선정하여
 - ②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이후 시가보다 높은(낮은) 가격으로 매도(매수)주문을 내고,
 - ③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(매도)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켰음
 - * 선물·옵션의 경우 만기가 많이 남은 원월물 종목, ELW(주식워런트증권)의 경우 기초자산이 개별종목인 경우 등

2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거래의 구체적 사례

[사례 1 : ELW를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]

- 일반투자자 甲은 乙의 계좌 운용을 위임받아, 甲계좌와 乙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乙계좌의 자산을 본인(甲) 계좌로 이전한 사례
 - (단계 1 : 甲계좌에서 시가 매수) 甲은 ELW를 시가로 매수한 이후 동 ELW를 시가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 제출
 - (단계 2 : 甲계좌에서 乙계좌로 고가 매도) 甲은 운용을 위임받은 乙계좌에서 고가(甲의 매도가격)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매를 체결
⇒ 甲은 乙계좌로부터 매매차익 만큼 부당이득을 취득

[사례 2 : 미국달러 선물을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]

- 丙은 장부 기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대표 丁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, 거래량이 적은 미국달러 선물 원월물 종목을 이용하여 丙명의 계좌와 戊(회사명의)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한 사례
 - (단계 1 : 丙계좌에서 戊계좌로 고가매도) 거래량이 거의 없는 원월물 미국달러 선물을 대상으로 丙계좌에서 戊계좌로 이론 가격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달러선물을 매도
 - (단계 2 : 丙계좌에서 戊계좌로부터 저가매수) 불과 수초 이후 丙계좌에서 매도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戊계좌로부터 달러 선물을 재매입하여 포지션을 청산
⇒ 丙은 청산과정에서 취득한 매매차익을 회사대표인 丁에게 전달

3. 투자자 유의사항

-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,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당부드림

①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

- 본인의 계좌와 타인(회사 또는 위임받은) 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^{*}에 해당될 수 있음
 - * 횡령·배임, 세금탈루, 펀드간 인위적인 수익률 조정 등

② 계좌 운용을 개인간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가장한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됨

- 파생상품의 경우 직접 현금인출 대신 매매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투자자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- 또한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계좌 운용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는 자금 횡령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

4. 향후계획 등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
-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
- 이와관련, 파생상품 시장에서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

-----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 -----

- ☞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접속
→ 우측메뉴 중 [조화신고] 선택 → [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] 클릭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자료

1. 주식워런트증권

- **(개념)** 주식워런트증권(ELW : Equity Linked Warrant)은 주가 지수나 주식 등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일(만기일)에 미리 정한 가격(행사가격)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증권
- **(특징)** ELW는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① 주식과 달리 만기가 존재하고, ② 의무적 유동성공급자(LP : Liquidity Provider)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

2. 미국 달러선물

- **(개념)** 미국달러/원화(\$/₩) 현물환율을 기초자산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전에 정한 물량을 거래하는 선물
- **(특징)** ① 주로 환위험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으로 금융투자회사,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며, ② 실제 거래는 최근월물과 근월물에서 주로 이루어짐